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4. 12. 24.(화) 11:00
(지 면) 2024. 12. 24.(화) 석간

민간위탁 관리체계 혁신으로 계획성·책임성 대폭 강화

- 「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12월 24일(화) 국무회의 의결
- 범정부적 일관된 민간위탁 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적 기반 마련
- 독립된 감독기구 설치, 독점위탁 제한, 관리·감독·평가 강화 등이 골자

- 행정안전부는 「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(이하 ‘민간위탁법’)」 제정안이 12월 24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.
-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1981년 도입된 민간위탁 운영은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와 행정안전부 주관 실태조사(2023년~2024년) 등에서 문제점이 지적됐다.
- 고도의 공익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사무를 위탁하거나, 유관단체가 수탁기관이 되어 스스로 관리·감독하는 사례, 독점위탁이 장기화되면서 수탁기관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.
- 이에, 20대·21대 국회에서 「민간위탁법」 제정을 추진했으나 폐기되어 이번에 종전 법률안을 수정·보완해 재입법하는 것이다.
- 행정안전부는 부처협의(‘24.9~10월) 및 입법예고(‘24.9~11월)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, 법제처 심사(‘24.11~12월)를 거쳐 법률안을 확정했다.

[참고] 민간위탁 개요

- (개념)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민간의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하에 당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
- (근거) 「정부조직법」 및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 등
- (기준) 행정기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 업무 등과 같이 국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
- (사무 수) 42개 중앙행정기관이 1,643개 사무를 민간위탁(‘23년 기준)

- 이번 「민간위탁법」 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- 먼저, 범정부적으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한다.
 - 행정안전부는 민간위탁의 기본목표, 중장기 추진방향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(5년 단위)을 수립하고 각 부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해, 범정부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의 계획적인 체계를 확립한다.
 - 각 부처에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위탁 사무 선정부터 성과평가까지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하고,
 - 행정안전부에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.
- 수탁기관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독점위탁을 제한한다.
 - 각 부처는 원칙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(민간위탁 사무를 수탁하는 기관)을 선정함으로써 수탁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행정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.
 - 수탁기관이 법령에 특정된 경우에는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, 수탁기관 변경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(5년 이내) 재검토한다.
-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·감독도 강화한다.
 - 각 부처는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 과정 전반을 관리·감독하고,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처리를 취소·정지하거나, 위탁계약을 해제·해지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도 실시한다.
 - 또한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재계약 시 반영한다.
 -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가 실시하는 관리·감독 및 성과평가 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 한 후, 그 결과를 공개한다.
- 고기동 차관은 “「민간위탁법」이 제정되면 민간위탁의 계획성·책임성이 대폭 강화되어 국민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”며,
 - “앞으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조직국 사회조직과	책임자	과 장	서경원 (044-205-2361)
		담당자	사무관	구송현 (044-205-2374)

참고1

중앙행정기관 민간위탁 운영 현황 ('23년 말 기준)

□ (총괄) 42개 중앙행정기관이 1,643개 사무를 민간위탁

기관	사무 수	기관	사무 수	기관	사무 수
금융위	428	질병청	31	농진청	5
국토부	193	소방청	28	해경청	5
복지부	112	통일부	26	경찰청	5
원안위	98	산림청	26	기상청	4
해수부	96	통계청	21	공정위	3
산업부	74	문체부	20	인사처	3
중기부	56	특허청	19	법제처	3
농식품부	56	개인정보위	16	조달청	2
고용부	51	국가유산청	9	국조실	2
과기정통부	49	기재부	8	방사청	2
행안부	44	보훈부	8	국세청	1
교육부	43	여가부	8	행복청	1
환경부	40	법무부	7	새만금청	1
식약처	33	관세청	5	동포청	1

□ (사무유형) 확인·조사(22%), 검사·승인(13%), 신고·등록(9%) 順

□ (위탁형식) 법정위탁(77%), 지정위탁(11%), 계약위탁(12%)

참고2

「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」 제정안 세부내용

◆ (법안 목적) 민간위탁 운영 전반*의 종합적이고 공정한 관리체계 구축

* 사무 선정 → 수탁기관 선정 → 계약체결 → 관리·감독 → 평가 → 환류(시정조치, 포상 등)

- ① (독립 감독기구 설치^{신설}) 행안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부처 민간위탁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무의 선정부터 성과평가까지 체계적으로 관리
※ (심의위) 정책·제도·법령 개선,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 및 감사 의뢰 등 심의 (운영위) 위탁사무 선정, 수탁기관 선정, 관리·감독·감사 결과, 성과평가 결과 등 심의
- ② (기본·시행계획 수립^{신설}) 행안부 5년 단위 기본계획* 및 부처 매년 시행 계획**을 수립하여 종합적·체계적 추진방향 설정 및 관리 책임성 강화
* (기본계획) 기본목표, 중장기 추진방향 등 ** (시행계획) 운영현황, 관리·감독·평가 계획 등
- ③ (독점위탁 제한^{신설·강화}) 공정과 경쟁에 기반하도록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, 선정 기준·배점·결과 등 공개
※ 법정위탁의 경우, ①법정위탁 외의 민간위탁으로 전환 노력 부과, ②주기적으로(5년 내) 법정위탁 존속 여부 재검토 의무화
- ④ (재위탁 제한^{신설})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는 재위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를 두도록 함
- ⑤ (관리·감독·평가 강화^{신설·강화}) 각 부처는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해 수탁기관을 관리·감독·감사 및 성과평가 실시
※ 부처는 수탁기관의 ①위법·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해 사무처리 취소·정지, 시정조치 및 임직원 징계 요구, ②위탁계약 위반 시 위탁계약 해제·해지 가능
- ⑥ (상위평가 및 인센티브^{신설}) 행안부는 각 부처의 관리·감독·감사 및 성과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후 대국민 공개
※ 종합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처는 포상, 미흡한 부처는 시정 요구 또는 감사원에 감사 의뢰
- ⑦ (시행일) 공포 6개월 후 시행

참고3

민간위탁법안, 위임위탁규정, 업무처리지침 비교표

구분	현행		민간위탁법안
	위임위탁규정(대통령령)	민간위탁업무처리지침	
위원회 설치	■ 관련 규정 없음	■ 부처 민간위탁운영위 설치하여 민간위탁 필요사항* 심의 * 위탁사무 선정, 수탁기관 선정, 계약체결내용, 관리·감독·감사 결과 등 ※ 소속 정책자문위 활용 가능	■ 행안부 민간위탁심의위 및 부처 민간 위탁운영위 설치 → 사무선정 부터 성과평가 까지 체계적 관리 ※ (심의위) 정책·제도·법령 개선, 종합 평가 결과에 대한 시정 요구 등 심의 ※ (운영위) 위탁사무 선정, 수탁기관 선정, 관리·감독·감사평가 결과 등 심의
계획 수립	■ 관련 규정 없음	■ 관련 규정 없음	■ 행안부 기본계획 (매5년 / 기본목표, 중장기 방향 등), 부처 시행계획 (매년 / 운영현황, 관리·감독·평가계획 등) 수립 → 관리 책임성 강화
독점 위탁 제한	■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- 필요시 수탁기관 자격 제한 可	■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에 의한 일반경쟁 으로 모집 - 필요시 수탁기관 자격 제한 또는 수의계약 可	■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 + 선정기준·배점·결과 등 공개 ※ 법정위탁 은 ① 법정위탁 외의 민간위탁 으로 전환 노력 부과, ② 주기적 (5년 내) 법정위탁 존속 여부 재검토 의무화
재위탁 제한	■ 관련 규정 없음	■ 수탁기관에 위탁한 업무의 재위탁 원칙적 금지 ※ 법령에 규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해 재위탁 허용	■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의 재위탁 원칙적 금지 ※ 재위탁 필요 시 법령에 근거 마련
계약 체결	■ 수탁기관 선정 후 위·수탁 기관 간 계약체결	■ 수탁기관 선정 후 위·수탁 기관 간 계약체결 및 결과 공개 (위탁유형 불문)	■ 수탁기관 선정 후 위·수탁기관 간 계약체결 및 결과 공개
관리· 감독	■ 부처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해 수탁기관 지휘·감독 ※ 수탁기관의 위법·부당한 사무처리 시 ①사무처리 취소·정지, ②지시 및 조치 명령	■ 부처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해 수탁기관 지휘·감독 ※ 수탁기관의 위법·부당한 사무처리 시 ①사무처리 취소·정지, ②지시 및 조치 명령	■ 부처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해 수탁기관 관리·감독 ※ 수탁기관의 ① 위법·부당한 사무처리 시 사무처리 취소·정지, ② 위탁계약 위반 시 위탁계약 해제·해지 可
감사	■ 부처는 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 ※ 수탁기관의 위법·부당한 사무 처리 시 시정조치 및 임직원 문책 요구 可	■ 부처는 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개선방안 마련·시행 ※ 수탁기관의 위법·부당한 사무 처리 시 시정조치 및 임직원 문책 요구 可	■ 부처는 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해 필요시 감사 ※ 수탁기관의 위법·부당한 사무처리 시 시정조치 및 임직원 징계 등 문책 요구 可
성과 평가	■ 관련 규정 없음	■ 관련 규정 없음	■ 부처는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※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 可 ■ 행안부는 부처의 운영결과를 종합평가 후 대국민 공개 ※ 우수기관은 포상, 미흡기관은 시정 요구 또는 감사원에 감사 의뢰